

#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현옥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364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4.

발의자 : 현옥순 의원 외 12명

## 1. 개정이유

-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등의 이용 대상을 장애인외 노인등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안산시 장애인·노인등의 이동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,
- “수리센터” 와 “수리업체” 의 수리비용 청구방법을 구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에 노인등에 대해 명시함(안 제2조)
- 지원대상자별 연간 지원금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)
- “수리센터” 와 “수리업체” 의 수리비용 청구방법을 구분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- 노인등의 수리센터 등 이용에 대해 규정함(안 제6조)
- 수리센터 위탁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(안 제7조)

## 3. 일부개정 조례안 : 붙임1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2

## 5. 현행조례 : 붙임3

## 6.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4

## 7. 예산수반사항 : 붙임5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## 8. 입법예고결과 : 해당사항 없음

- 입법예고기간 : 2020. 4. 2 ~ 4. 7 (5일간)

## 9. 기타 참고사항 : 붙임6 (관련부서 검토의견서)

## [붙임1]

#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“장애인”이란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및 제3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.
- “노인등”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지원센터”를 “수리센터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지원대상자(이하 “지원대상자”라 한다) 및 기준”을 “지원대상자(이하 “지원대상자”라 한다)는 장애인으로 하며, 지원대상자별 해당 수리비용에 대하여 연간 지원금”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해당 수리비용 전액”을 “30만원 이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해당 수리비용 100분의 50”을 “15만원 이내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제1호 외”를 “제4조제2항제2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수리센터 등은”을 “수리업체는”으로, “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이동기기 수리비용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”을 “수리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”로 하며,

같은 조 제3항 중 “수리센터 등이”를 “수리업체가”로, “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수리센터 등의 지정계좌에 청구금액을”을 “청구금액을 수리업체 지정계좌로”로 한다.

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노인등의 수리센터 등 이용)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인등은 수리센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다. 다만, 그 수리비용은 해당 노인등의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.

② 수리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류 또는 노인성 질병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현행의 제6조)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② 그 밖에 수리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안산시의회
임 안 자	시의원	현옥순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65)

[붙임2]

**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
1. “장애인”이란 안산시 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해당되고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.	1. “장애인”이란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및 제3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.
<신 설>	2. “노인등”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「노인장기요양보협법」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.
2. (생 략)	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3. (생 략)	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제3조(수리센터 설치·운영 등) ① (생 략)	제3조(수리센터 설치·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지원센터 외에도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이동기기 수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안산시 이동기기 수리업체(이하 “수리업체”라 한다)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	② ----- 수리센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4조(지원 및 대상 등) ① (생 략)	제4조(지원 및 대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지원대상자(이하 “지원대상자”라 한다)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 연간 지원기준은 각각 제1호의 경우 30만원 이내, 제2호의 경우 15만원 이내로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: 해당 수리비용 전액

2. 제1호 외의 장애인: 해당 수리비용 100분의 50

③ (생 략)

제5조(수리·지원신청 등) ① (생 략)

1. (생 략)

2. 제1호 외의 장애인: 장애인 복지 카드 등 증명서류

② 수리센터 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이동기기의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이동기기 수리비용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수리센터 등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수리내역과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해당하는 달의

② ----- 지원대상자(이하 “지원대상자”라 한다)는 장애인으로 하며, 지원대상자별 해당 수리비용에 대하여 연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단서 삭제>

1.-----  
-----  
30만원 이내

2. ----- 15만원 이내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수리·지원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4조제2항제2호-----  
-----

② 수리업체는 -----  
-----

----- 수리완료  
후 별지 제2호서식에 매달 1일부터  
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③ ----- 수리업체가 -----  
-----  
----- 청구금액을 수

말일까지 그 수리센터 등의 지정계좌에 청구금액을 입금해야 한다.

④ · ⑤ (생 략)

<신 설>

제6조(위탁운영) ① (생 략)

② 수리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은 해당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거쳐 그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수리센터의 수리비용 외에도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

④ 수리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.

리업체 지정계좌로 -----  
-----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6조(노인등의 수리센터 등 이용) ①

제2조제2호에 따른 노인등은 수리센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다. 다만, 그 수리비용은 해당 노인등의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.

② 수리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류 또는 노인성 질병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탁운영) ① (현행 제6조제1항과 같음)

② 그 밖에 수리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<삭 제>

<삭 제>

1.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

조례」 : 수탁자의 선정 및 경비보  
조, 위탁업무의 지도·감독, 위·  
수탁협약의 체결·취소 등 및 이  
의신청,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

2. 「안산시 재무회계 규칙」 : 수리비

용 및 위탁운영경비의 회계처리  
제7조~제11조 (생략)

제8조~제12조 (현행 제7조~제11조와  
같음)